2015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5년 3월 26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장 택 규 커뮤니케이션국장

장 민 조사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박 성 준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김 욱 중 안정총괄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14호 — 2014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14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 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19일 위원협의

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연차보고서에 수록되는 참고자료중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과거 보고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참고자료는 해당연도의 주요 이슈나 당행의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외부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수록하는 참고자료의 수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연차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상황, 당행의 업무수행 및 경영상황을 독자들에게 보다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설명부분에서 금리결정과정을 보다 상세히 기술(記述)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통화위원 상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연차보고서가 국민들에게 당행의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보고서이므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재무 및 인력상황과 외화자산 운용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2014년중 글로벌 연수 및 세미나 개최현황 관련<표> 등 일반 국민 입장에서 관심도가 낮은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4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4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의안 제15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하였음.

또한 담당부서는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 차례 위원협의회에서 이 미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안건에서 보고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_

<의안 제16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6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선방향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도증액의 취지,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해 보다 치밀한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강화로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를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위원은 경제환경 변화 및 내수확대 필요성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앞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정부 정책금 융 등과의 차별성, 상호 보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 타내었음.

일부 위원들은 기업대출 전반에서 한국은행 자금이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에 대한 분석,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관행 개선을 위한 유인 강화 방안, 그리고 환율변동 피해기업에 대한 배려 및 수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금융제도 점검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해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등에 더해서 통화정책 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등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제도개편보다는 한도 및 금리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향후 이번 지원강화 방안의 의미,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위원들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검토하겠다고 첨언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그동안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원 효과를 크 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금리 조정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에 대한 의지표명 자체가 announcement 효과를 통해 경제주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동 정책의 시행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중요한 통화정책 수 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컨셉을 분명히 하고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상당수 정부의 금융지원이 실제로는 규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에는 큰 룰(rule)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연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신용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시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일종의비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옮겨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충분한 잉여자금 보유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리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우량 중견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견기업을 선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담당 부총재보는 신용도도 우량하고 업황이 좋아 충분한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있지만, 상당수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때에 받았던 정책금융지원이 종료되고 대기업처럼 직접금융시장(회사채·주식)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우리나라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한시적으로 1년동안만중견기업을 포함시켰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 · 가결

의결사항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현재의 15.0조원에서 5.0조원 증액하여 20.0조원으로 정한다.

이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3.0조원에서 2.0조원 증액한 5.0 조원으로 한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3.0조원에서 3.0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는 1.0조원 추가 증액한 7.0조원으로 한다.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0조원을 유지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는 1.0조원을 전액 감액하여 폐지한다.

여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의안 제19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세 회복 지원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를 연 0.5%~1.25%에서 연 0.5%~0.75%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개정(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28호 — 최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

(1) 안정총괄팀장이「보고 제28호 - 최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2015년 3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신용에 대한 분석시 가처분소득 등 여타 지표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부실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분석 시에는 요주의 여신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등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의 수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이어 일부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북구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플로우(flow)측면의 가계저축률과 스톡(stock) 측면의 가계자산상황 등에 따라 충격에 대한 복원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북구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높고 금융자산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는 데다, 연금이 발달되어 있어 가계부채 상환능 력이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대출 또는 중소기업대출로 관리되는 자영업자 대출상황에 대하여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유동화가 어려운 주택이 가계의 보유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행정통계 등 다양한 통계원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의 담보활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고DTI대출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된 데에는 대출금리 하락, 장기분할상환대출의 비중 증가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석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기존의 금융안정보고서 심의에 더하여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회의를 총 연4회 갖게 된 것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사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복원력 점검은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와 깊은 관련이 있고, 금융안정상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책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나 금융안정보고서에 글로벌 금융규제에 대한 최근 논의내용을 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한은이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았으나 동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은 통화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책수단 점검과 관련하여 유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이 한은법 제1조에 임무로 부여되어 있지만 제28조에는 자료제공 요건 외에는 당행의 거시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당행이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감시 및 경보 기능에 머무를지 정 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및 복원력(resilience) 평가 외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당행의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거시금

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당행의 금융기관 검사는 거시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한 분석, 당국간의 정책부조화 해소 등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거시금융안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며 시스템 리스크 조기발견을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효과적인 대외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 또는 매매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세의 매매전환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향후 가계부채총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금리인하 효과와 DTI, LTV 규제완화 효과를 분해(decompose)해서 가계부채 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상호 영향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고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더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외부 기구에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영란은행의 경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통화정책위원회 (MPC, Monetary Policy Committee),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정책위원회 (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가 있고 두 위원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했다고 첨언하고 금융안정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황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의 실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경제주체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예금·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저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여타 거시정책과의 정책조합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최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 관련 보고내용

I. 거시 금융안정상황

1. 시스템리스크 상황

민간신용/GDP비율이 지난해 2/4분기 이후 큰 폭 상승하였고 민간신용/GDP 비율과 동 비율의 장기추세 간 차이를 나타내는 민간신용/GDP 갭도 지난해 4/4분 기중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하였음

금융권 내의 자산·부채 연계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후 은행-비은행간 연계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금융자산 중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2. 금융기관 경영상황

은행은 자산성장세가 확대되고 자산건전성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2014년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과 외화유동성사정은 양호한 수준임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었음. 모든 업권의 수익성 지표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업권별 편차가 크고 일부 업권에서는 낮은 수준에 그침

3. 종합평가

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취약가구의 재무건전성 상황 등에는 유의할 필 요가 있음

Ⅱ. 가계부채 동향 및 평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014년말 현재 1,089.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6.6% 증가하였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감소한 다수 선진국과는 달리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명목소득 증가속도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음. 가계의 소득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가계의 전체적인 자산·부채구조나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을 감안할 때 가계 부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취약계층이 보유한 가계대출 등이 충격 발생시 금융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정부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방식 대출 확대정책은 이자부담액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 억제, 취약계층 지원 노력 강화,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